


2003. 행정사무감사서면답변자료

| | | | |
|------|---------------------|------|---------------|
| 질문위원 | 김 회 곤 | 소관부서 | 총무위원회 을숙도문화회관 |
| 질문내용 | 지하식당 임대계약서 사본 1부 제출 | | |

지하식당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제출하겠음

을숙도문화회관 지하식당 변경사용계약서

원본대조필 

○ 재산의 표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151-14번지 을숙도문화회관
· 전시관리동내 지하1층 전용면적535.02㎡, 공용면적153.40㎡ ·
외부공간230.03㎡ 및 주방비품 47종 49점

위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장을 “갑”이라 하고 사용허가 받은자 부산캐터링서비스(주) 대표(이용민)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을숙도문화회관내 지하식당 사용에 의한다

제2조(사용허가 기간) 사용허가 기간은 2002년10월5일부터 2005년10월4일까지로 한다. 단, 변경된 부분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은 2002년10월30일부터 2005년10월4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및납기) ①사용료 및 납기는 다음과 같다

1년차 사용료는 금팔천오백육십일만팔백오십원(₩85,610,850)이며 계약금(계약시)은 금칠백육십사만오천원(₩7,645,000)으로 2002년8월24일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였고, 변경전 잔금 금칠천육백사십오만원(₩76,450,000)은 2002년9월23일 납부하였으며 시설사용 변경 부분에 대한 추가사용료 금구백일십육만팔백오십원(₩9,160,850)은 2002년10월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유자정정

②2년차 사용료와 3년차 사용료는 지방재정법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당해연도 재산가액×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입찰 당시의 재산가액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매년 산정하되 납기는 당해연도 경과 전일로 한다.

제4조(연체료율) “을”이 납기내(계약일로 부터 30일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리 15%의 연체료율을 일할 계산하여 년차별 사용료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을”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전항의 부담 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 청구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6조(보험가입 의무) “을”은 본 계약기간중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재산가액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금지사항)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사용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사용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하여 사용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이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후 2개월이 경과 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매년도 사용료를 2개월이상 연체할 경우와 무단으로 시설물을 개·보수하거나 정당한 “갑”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때
3. 제3조 내지 전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을”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 하거나 또는 이를 위반한 때 전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하는 경우에는 “을”이 손해를 입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일할 계산에 의거 정산한 금액을 반환한다.

제9조(손해배상) 제8조제5호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해약요구) ①본 계약 기간중에 “을”이 해약을 요구할 때에는 2개월 전에 해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약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는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하여 그 정산금액을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약으로 인하여 “을”이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이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원상회복)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정하는 기한내 사용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이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승인을 득한후 설치한 고정시설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변상금)① 사용기간 만료후에 “을”이 계속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무단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120%의 변상금을 일할 계산하여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위탁관리중 “을”의 관리 소홀로 시설물 파손, 도난시는 동일한 제품 또는 “갑”이 승인한 제품을 “을”의 부담으로 설치하거나 비용을 “갑”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조문 해석) 본 계약조항에 있어 “갑”과“을”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쌍방 합의하에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 비품인수인계서 및 사용허가조건 각1부.

2002년 10월 30 일

사용허가자(갑)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사 용 인(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1159-1번지

부산캐터링서비스(주) 대표이사 이용민(인)

